기획논단

조경수의 가격 적정화 방안

가산종합조경(주) 전무 국토개발기술사
이 수 길

1. 서

하나의 업종이 생겨서 발전해 나가고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더구나 조경분야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창조했다기 보다는 기존의 건축, 토목, 혹은 도시계획등 관련분야로부터 영역의 일부를 할애 받아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조경분야가 발전할수록 더많은 영역을 할애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관련분야와의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조경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되어지고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무렵으로서 본격화된 경제개발과 공업화의 추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실현에 따른 조경의 필요성의 인식과 조경공사 수요가 증대되면서 부터이며 조경용 수목의 선택이 초기에는 관상을 위주로 한 단순한 환경의 미화에 역점을 두었으나 오늘날에는 공해의 방지,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조, 기능중심과 실용위주로 선택 식재되고 있어 사용 수종의 폭은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20여년 동안에 조경이 각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해온것은 사실이나 소재의 개발과 유통구조, 가격적정화면에서는 과거의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을 동경하는 도시인들에게 조경수목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자연, 인공구조물과의 조화를 이룩하여 생활의 질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조경수목은 타 건설용 자재와는 달리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생물 재료라는 점이고, 둘째는 생산과정이 길어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소재자체가 환경에 적응되어야 한다는 점, 네째 장래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곧 다른 공산품과 같이 단기간에 생산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 생산될 수 있는 재료이므로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을 만회하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수종이 생산과잉되어 가격이 폭락하였을 경우 폭락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다음해부터 당장 그 수종은 생산이 중단되어 수년간 그 수종은 조경공사에 사용할 수 없게되며 또 다른 수종이 품귀되어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여 그 가격을 상승시켜 놓으면 몇년안에 그 수종은 생산과잉되어 가격파동을 초래하게 된다.

국토를 쾌적하고 조화있게 가꾸기 위해서는 조경분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수요에 맞는 적정량의 생산이 뒷받침 되어야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가격의 적정화를 기하여 생산자 및 실수요자의 이익을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조경용수목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문제점들을 알아본 뒤 조경용 수목의 가격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조경용 수목 생산 및 유통현황

우리나라 조경 수목의 생산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산림청, 조달청, 한국조경수협회 등과 발주처별로 부분적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으나 통계조사치의 정확성, 신뢰도가 낮고 또한 규격별로 조사되어 있지 않고 수목의 수령별, 경급별로 조사되어 있어 실용상 활용가치가 적다. 앞으로는 생산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가 규격별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조경 수목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의 수와 수종별 보유량은 아무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경수목 생산자들이 인기가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특정수종만을 집중 생산하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경수목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네가지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데 첫째 유형은 생산자 → 실수요자의 경로이고, 둘째 유형은 생산자 → 생산지 조달 중간 상인 → 실수요자의 경로이며, 셋째는 생산자 → 생산지 조달 중간 상인 → 소비자 중간상인 → 실수요자의 경로이며, 마지막 유형은 생산자 → 소비자 중간상인 → 실수요자의 경로이다.

조경수목의 모든 유통경로가 이러한 기본적 유형대로만 유통되는 것은 아니고 실수요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중간 단계의 하청이 발생하는 변형이 있기도 하다.

조경 수목의 수종별 생산지 현황과 수요자를 중간상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수목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중간상인들은 극소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본이 영세하기 때문에 수목을 직접 확보 판매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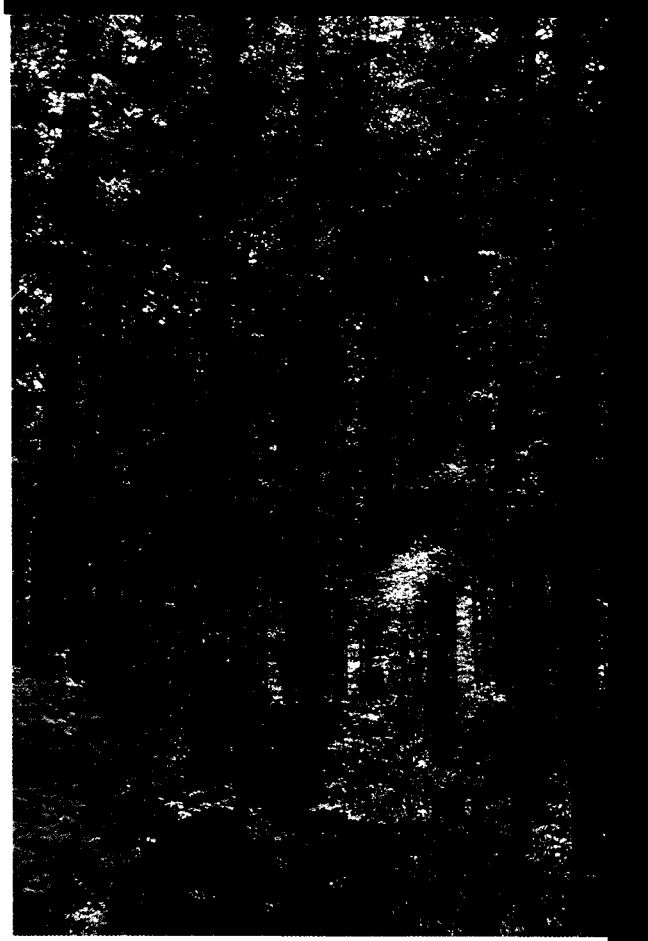

국토를 쾌적하고 조화있게 가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경소재의 기
수요 에 맞는 적정량의 생산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방식을 취하기 보다는 수요자에게서 선금을 받아 수목을 구입 알선하는 중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조경수목의 유통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역시 전혀 밝혀진 것이 없고 다만 조경공사의 시공 현황에 대한 부분적인 통계자료와 조경식물이용 경향에 관한 연구, 조경수목의 활용실태와 적정 수종선정에 관한 연구, 조경수목 유통의 문제점과 구조개선 방향등이 있으나 거의가 부분적이며 표본조사에 의한 유형별 분석등에 국한되어 있고 전국적인 통계자료로서 분석된 바 없다. 따라서 전국적인 수종별 총수요량의 자료는 현재로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나 이들 자료를 이용해 유통경향(사용)을 분석한 결과 사용빈도가 많은 조경용 수목을 성상별로 열거해 보면

상록교목

향나무, 잣나무, 독일가문비, 섬잣나무, 젓나무, 히말라야시다, 가이즈까향, 서양측백, 주목, 스트로브잣나무, 적송, 실편백, 동백나무, 곰솔,

편백, 반송, 둥근소나무, 아왜나무, 황금편백, 리기다소나무.

낙엽교목

느티나무, 청단풍, 프라타나스(양버즘나무), 목련, 은행나무, 꽃사과, 왕벚나무, 은단풍, 홍단풍, 당단풍, 배롱나무, 현사시, 회화나무, 자작나무, 메타세쿼이아, 자귀나무, 산수유, 모과나무, 목백합(츄립나무), 칠엽수

상록관목

회양목, 영산홍, 둥근향, 옥향, 눈향나무, 둥근주목, 사철나무, 광나무, 꽝꽝나무, 피라칸사스, 호랑가시나무, 돈나무, 치자나무, 밀감나무, 비파나무, 팔손이

낙엽관목

무궁화, 수수꽃다리(라일락) 개나리, 산철쭉, 쥐똥나무, 명자나무, 겹철쭉, 자산홍, 장미, 불두화, 진달래, 박태기나무, 철쭉, 화살나무, 고광나무, 병꽃다무, 모란, 좀작살나무, 낙상홍.

만경류 및 지피식물

잔디, 등나무, 덩굴장미, 실란, 맥문동, 담쟁이덩굴, 유카, 당종려, 머루나무, 칡, 산죽, 오죽, 능소화, 다래, 으름나무, 조릿대, 종려, 마삭줄, 산딸기, 송악. 등이다.

한편으로 초본성 화훼류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시기와 초본류의 식재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될 수 있으나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아직도 조경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식재후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계절적인 변화감, 조경상 색채의조화로 인한 조경 미적 시각적 효과는 매우 크게 작용되리라고 사료되므로 좀더 적극적인 이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3. 조경용 수목 생산 및 유통의 문제점

가. 생산

(1) 무계획적 생산체제

조경수목의 생산 실태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다 수요에 대한 정보도 간헐적으로 약간씩 정도로만 입수되기 대문에 장래 수요의 예측이나 전망을 제대로 할 수없어 계획성 있는 생산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 부업적인 경영형태

조경수목 생산을 주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조경 수목 생산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으므로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여 조악한 경영이 되고 있다.

(3) 생산수종의 집중화

새로운 수종의 개발보다는 인기가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수종을 안전하게 택하여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수종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신규수종에 대한 수요가 없고 이것이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수종의 개발을 기피하게 하여 특정 수종만을 편중적으로 생산하게 만들었다.

나. 유통

(1) 복잡한 유통구조

조경수목의 유통단계에서 중간상인의 개입이 많아지고 하청단계가 많아질수록 유통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중간비용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의 판매가격이 낮아지든지 아니면 실수요자의 구입가격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면 수목의 품질에 대한 책임도 애매해 질 뿐더러 불성실한 중간상인은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서 과다 적재를 행하는 등으로 더욱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많다.

(2) 전문 중간 상인의 부족

중간상인들의 대부분은 수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거래에 쓸데없는 시간과 경비의 과다지출을 유발한다.

(3) 덤핑판매의 성행

차치기간의 도래, 긴급한 자금의 수요, 타용도 및 사업으로의 전환,관리소홀로 인한 불량목 처리 등의 사정으로 덤핑판매가 성행되고 있는데 덤핑관계로 유통되는 조경수목들은 대체적으로 수목의 품질이 저질의 것이 많기 때문에 하자발생률도 높고 중간상인의 이익을 많게 해주는 악영향을 일

> 한편으로 초본성 화훼류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시기와 초본류의 식재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될 수 있으나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아직도 조경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식재후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으킨다.

4. 조경용 수목의 가격적정화 방안

가. 연혁 및 현황

(1) 1977년 조경 소재 표준화 및 가격적정화에 의한 가격통일 전에는각 수요기관별로 상이하게 수목가격을결정 활용하였다. 따라서 전국 각 기관의 조경사업 시행에 있어서 조경 소재의 대종을 차지하는 조경용 수목의 명칭 규격, 적용단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6년 9월 28일 청와대 경제 제1비서실 조경 관광 담당 비서관실의 주관으로 건설부외 9개 관계 기관의 실무자 및 국장 이사급 회의에서 조경 수목의 명칭 및 규격을 표준화하고 주요조경소재(조경수목 및 잔디)에 대한 단가도 정부단가 사정방법인 원가 분석방법에 의거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함으로서 통일성 있는 공사의 집행과 조경사업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음.

…참석범위( )은 실무자급…

청와대 경제 제1비서실 조경 관광 담당 비서관

국방부 동원예비국장(조달본부 설계과 토목계장)

건설부 국토계획국장(토지이용계획과 조경계장)

산림청 조림국장(치산과 보전계장)

조달청 시설계약 국장(토목과 토목계장)

문공부 문화재 관리국 관리관(문화 제1과 기념물 계장)

서울특별시 녹지국장(조경과 조경 2계장)

대한주택공사 기술이사(조경과 설계계장)

한국도로공사 기술이사(조경과 설계계장)

한국종합조경공사 전무이사(조달부장)

(2) 매년 12월에 관계된 회의를 개최하여 익년도 조경사업 집행에 필요한 제반문제점에 관하여 협의조정토록 합의.

(3) 1978년부터 1980년까지 관계관 회의 주관을 건설부에서 집행해 오다가 1980년말 1981년도 조경 수목단가를 협의 확정한 후 1981년부터 조달청에서 그 업무를 주관해 오고 있다.

(4) 조달청에서는 조경 수목의 대량 수요기관(조달청(물가조사과), 산림청(조림과), 건설부(자연공원과), 서울특별시(조경과), 문화재 관리국(공원관리과), 철도청(시설과), 국방부 조달본부(토목과), 한국도로공사(조경과), 대한주택공사(토목견적부 조경담당), 문교부(시설과), 수자원개발공사(건설 1처 조경과))의 실무자들로 조사반을 편성 각 지역별로 선정된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상호 협의 조정하여 조달청 발행의 가격 정보지에 수록해 오고 있다.

(5) 한국 조경수 협회에서는 생산자로 부터의

조경수목의 생산실태에 관해서는 장래수요의 예측이나 전망을 제대로 할 수 없이 계획성있는 생산을 하기가 어렵다.

입목대조사, 중간상인 및 시공자로 부터의 유통비용을 조사하고 정부 단가 사정방법인 원가 분석방법에 의한 협회 조사치 등을 비교검토하여 협회의 조경 수목 가격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회 이사, 학계, 관계를 망라한 특별위원회에서 가격 및 수종을 결정하여 매년 조경수협회 조경 수목 가격표를 발간하고 있다.

(6) 공인 물가 조사 4개 기관(물가자료지(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물가정보지(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센타), 유통물가지(한국응용통계연구소), 거래가격지(대한 건설협회))에서도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물가지에 가격을 수록하고 있다.

나. 문제점

(1) 생산

(가) 생산지 및 생산과정에 따라 현격한 가격의 차이가 있으며

(나)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도 현격하여 심한 경우에는 미술품 또는 골동품의 가격차이에 버금가는 경우도 있다.

(다) 투기적인 생산자의 덤핑목과 무주목이 상당량 거래되어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례가 많다.

(라) 조경수목의 생산은 대규모,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전문기술인에 의한 효율적인 기업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성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산농장이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수요수종 품질 및 규격, 가격 동향에 대한 판단 능력의 결여로 심한 가격의 차이를 보인다.

(2) 유통

(가) 복잡한 유통 구조와 막대한 유통비용 때문에 다른 농산물과 같이 생산지 가격보다 현장도착 가격이 월등히 높다.

(나) 유통물량에 따른 가격 차이가 많다.

(다) 식재시기, 수종별 수급상황등에 의한 계절적 변동 요인이 많다.

(라) 수요자의 취향, 기호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하다.

(3) 가격조사

(가) 각종 물가 조사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차출된 조사원들이 가격 조사 업무에 임했을 때 생산자들은 그들이 실구매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현장도착가를 조사하려고 하면 생산자는 본인이 팔고저하는 입목대의 개념은 있으나 복잡한 유통비용까지 세밀히 추정하지 않고 적당히 답변하므로 조사치의 가격이 입목대, 현장도착가로 구분되지 않아 조사치의 신뢰도가 낮다.

(나) 시공자에게 조경 수목 가격을 조회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또한 조사치의 신뢰도가 낮으며 상대방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엉뚱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 가격 조사에 임해보면 응답자 중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종의 가격은 올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는 수종의 가격은 내리는 심리가 간혹 작용하여 평균치가 실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조사되는 사례가 많다.

(라) 조경수목의 가격은 소재가 지닌 특성상 장기적 수요 및 공급의 예측하에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나타난 현상에 대응하려는 사고의 미흡이 문제가 되고 있다.

(4) 하자에 관한 제도 및 법령

(가) 조경공사는 재료의 대부분이 생물이므로 다른 건축이나 토목, 전기, 설비등과 달라서 환경적응 능력의 범위가 판이하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의 하자 규정을 건설공사에 일괄 포함하여 규정함은 부당한 처사이다.

(나) 수목의 활착이 1년이면 이루어져 활착 여부가 분명해진다는 견해에 따라 영국의 경우 1년, 일본의 경우 6개월~1년, 국제 건설계약의 경우 전형적으로 1년으로 정해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1년에서 3년까지의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1년의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그 기간을 늘려 잡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활착후 유지관리사이의 하자도 시공자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설계와 계약시에 시공자나 전문관리 용역업체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관리의 책임과 기간을 부가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보장책이 미흡(유지관리비 지급)

(라) 하자 구분과 책임한계의 불명확성등으로 인한 과중한 하자비용의 부담은 영세한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다. 대안제시

조경용 수목의 가격 결정은 정부단가 산정 방법인 원가 분석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자유경제체제의 원칙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기능 즉 시장거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경 수목의 특성상 원가 분석방법이나 시장거래 가격의 적용은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또한 물가 상승율등을 적용한 도술적인 방법을 채택할 경우 조경용 수목의 개발 및 생산, 공급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조경용 수목의 가격은 첫째 정부단가 사정 방법인 원가 분석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산림 종묘가격 인상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새로운 수종 및 규격의 추가와 현저하게 가격이 등귀하거나 등락한 수종 및 규격에 대한 단가 적용은 관계, 학계, 업계 등 조경용 수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심의기구를 설치 심의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학계, 관계, 업계의 전문인들의 참여폭을 넓혀 각계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의 자유화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의 실현을 촉진시키고 다양화하는 조경

“

현재 정부 중앙부서 내에는 조경업무를 총괄하는 책임부서가 없다.

따라서 정부 중앙부서내에 조경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 조경수목의 장기적 수급동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생산을 조절하고 정보체계를 확립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시 수종의 다양화, 규격의표준화 및 가격적정화에 대한 연구검토와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과 정비, 업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의 흐름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역사가 일천하고 업체 규모가 영세하며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법령 및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조경의 영역 확대 및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선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격 결정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현장도착가로 되어 있는 조경용 수목의 단가를 수요기관별로 사업계획 특성에 알맞게 설계시 수요 수목에 대한 산지별로 입목가를 조사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유지 관리비(뿌리돌림, 병충해방제, 전지, 전정)외 유통비용을 현실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 방안의 실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사회의 신뢰성 문제가 우선되어져야 하겠으나 계획목적 및 특성의 제고, 조경공사의 다양화 적기시공, 하자 발생율의 경감등으로 공사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셋째, 모든 사회 여건이 성숙되고 빈도가 높아져 공무원 사회에 성실과 신뢰가 우선되어지며 업자의 양식이 고양되어지고 관주도형의 경제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진다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부에서 수목 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산지별, 수형별, 품질별 수요자의 기호 및 취향, 설계자의 재량에 따른 가격 자율화의 방안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조경용 수목의 가격 적정화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근본적이며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실정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생산자, 실수요자, 사업집행자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조경업 전체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아픔을 동반하는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되어지나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요청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경용 수목의 가격 결정은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단기간에 나타난 현상에 즉각 대응하기 보다는 장기 안목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인들이 계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분야라고 사료된다.

5. 제언

조경수목의 개발 및 생산, 유통구조, 규격표준화 및 가격 적정화에 대한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으로

가. 조경 담당 중앙부서의 설치

현재 정부 중앙부서내에는 조경업무를 총괄하는 책임부서가 없다. 그러므로 조경 수목의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정보체계의 확립이 미흡하고 유통구조 정비, 규격표준화 및 가격적정화에 대한 종합적 조절 기능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중앙부서내에 조경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 조경 수목의 장기적 수급동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생산을 조절하고 정보체계를 확립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시 수종의 다양화, 규격의 표준화 및 가격적정화에 대한 연구검토와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과 정비, 업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거나 현행기구내에서 관련성이 가장 많은 과나 국에서 업무를 확장하여 수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조경의 역사와 영역의 확대, 인간생활의 질에 대한 기여도 및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도 절실하며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나. 기존 단체 활성화및 산학 협동 체계확립

기존의 한국 조경수협회, 산림조합등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수목정보센터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거나 각 대학의 조경 관련 부설 연구소 혹은 조경학회에 장기계획 수립을 의뢰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며 일본과 같이 녹화센터나 수목협회와 같은 유사기구의 설립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 또한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각 단체 및 관련인등의 분발이 요청된다.

다. 전문 중간 상인의 양성 및 협동 사무실 설치 유도

중간 상인들의 대부분이 수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반면 자본의 규모가 영세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드물고 상호간에 정보교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추세에 대한 판단이 빈약하여 신용도 문제와 거래상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의 지출을 유발하여 유통질서를 혼란케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중간상인의 양성을 통한 자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무실을 개설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 체계화 시키는 방안과 각종 자료의 전산화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라. 수목 수요 예고제 실시

조경 수목의 생산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수요자와 생산자간의 정보 단절로 보여진다. 조경수목 생산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조경 수목 수요의 동향 및 수종별 물량예측은 생산자의 재배수종 및 생산 물량 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조경 수목 수요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자에게 향토 수종등 신규 조경 수목의 재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경수목의 대량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조경 수목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 3~5년전에 수종별 사용규격 및 예상수량을 생산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생산자의 재배수종 및 물량 결정에 도움을 주고 반면

조경수목 이식을 위한 뿌리돌림 작업.

수요자는 소요물량의 원활한 확보와 수종 다양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요 공급자 양측의 공통이익을 대변해 줄 뿐 아니라 특별한 자금 부담 없이도 시행가능한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조경수목 수요 예고를 시행할 경우 조경수목 생산은 체계적 전파기능 및 조절 장치가 없으므로 예고 수종 중 특정의 수종이 과잉 생산될 우려가 제기되나 예고 수종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생산 물량의 과잉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의영향력을 높이고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경 수목사용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의 합동예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 수목사용 실적 공표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론 생산자들은 기존의 협회나 산림조합들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는 수종을 선정 상호연대 생산함으로서 스스로 물량을 조절,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 재배의 확대실시

특수수종에 대한 전문생산업자와의 계약 재배 확대실시로 수목의 체계적 생산 및 수급을 통하여 유통질서의 확립과 안정적 수급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계, 업계, 관계등 조경인들의 부단한 공동노력과 생산자들의 자구 노력이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